

2020년 제11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97-16번지 (창고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0.11.17.~11.18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영진공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97-16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39,756.5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준공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5,476.40㎡	건폐율	13.78 %	층수 지하 : - / 지상 : 2층
	주 용 도	창고시설	구 조	SRC, PEB구조	건축물 동수 2동(주1, 부1)
	최고높이	11.70m	용적률	15.83%	연면적 합계 6,294.40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시공오류방지를 위하여 각 골조도면에 해당부재의 규격표시를 권장함 ○ 기초 타설전 토양내의 황산염등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내구성 확보할 것 ○ 16번 tension only truss의 경우 해석 시 “tension only truss element는 eigen value analysis에서는 truss element로 변경” 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남. 압축강성에 기여하지 않는지 재확인 요함 ○ 조적벽 하중은 해당층 바닥에 적용하였는데, 지진하중의 경우 조적벽 상부 지지되는 곳으로 절반의 하중이 전달됨. 조적벽 하중이 작지 않은 경우는 무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재검토 요함.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0년 제1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97-8지 (참고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0.11.17.~11.18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동방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97-8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39,581.0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준공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7,455.90㎡	건폐율	18.84%	층수 지하 : - / 지상 : 2층
	주 용 도	참고시설	구 조	SRC, PEB구조	건축물 동수 2동(주1, 부1)
	최고높이	9.2m	용적률	22.11%	연면적 합계 8,750.6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기초 타설전 토양내의 황산염등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내구성 확보할 것 ○ 16번 tension only truss의 경우 해석 시 “tension only truss element는 eigen value analysis에서는 truss element로 변경” 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남. 압축강성에 기여하지 않는지 재확인 요함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